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1호 2009. 9. 2.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12호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고시.....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570호 2009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3
- 정선군공고 제2009-581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4
- 정선군공고 제2009-587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공고.....40
- 정선군공고 제2009-591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2
- 정선군공고 제2009-596호 (FY2008) 2009년도 지방재정공시.....49
- 정선군공고 제2009-598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09-112호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고시

2008년도 결산기준 지방세(군세)지출 실적을 재정공시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군세(郡稅) 비과세·감면내역과 규모를 알리고 나아가 지방재정 건실화 도모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8. 25.

정 선 군 수

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개요

- 지방세 지출예산의 개념 :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인 비과세·감면·공제 등 원칙적으로 내야하지만 정책적 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함.
- ※ ①감면 :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경감세금
- ②비과세 : 지방세법에 의거 원칙상 부과해야 하나 정책상 받지 않는 세금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 지방세 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

나. 지방세 지출예산의 대상 :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에 한함.

다. 2008년 지방세지출 실적(군세) : 3,929,928,850원

- 2008년 군세 총 부과액 30,809,700,760원 대비 12.75%
- 2008년 군세 총 징수액 30,180,568,530원 대비 13.02%

라. 2008년도 지방세 지출예산 세부 내역 : ‘별첨’

마. 기 타 :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560-2282, 담당자 : 최광식)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세액 현황

(강원도 정선군)

(단위:원)

자치단체	세목	비과세감면	
		건수	세액
전체 전체	합계	14,058	3,929,928,850
강원도 정선군	재산세 소계	5,495	2,678,953,370
강원도 정선군	재산세(건축물)	1,222	254,769,130
강원도 정선군	재산세(토지)	3,427	2,394,053,670
강원도 정선군	재산세(주택)	846	30,130,570
강원도 정선군	자동차세 소계	6,911	532,342,130
강원도 정선군	자동차세(자동차)	6,904	531,880,680
강원도 정선군	자동차세(이륜차)	2	34,200
강원도 정선군	자동차세(기계장비)	5	427,250
강원도 정선군	도시계획세 소계	1,638	716,328,390
강원도 정선군	도시계획세	1,638	716,328,390
강원도 정선군	사업소세 소계	14	2,304,960
강원도 정선군	사업소세(재산할)	14	2,304,960

정선군공고 제2009-570호

2009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의거 「2009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8. 24.

정 선 군 수

- 1. 주 관 : 정선군
- 2. 추천기간 : 2009. 8. 24. ~ 9. 17.(25일간)
- 3. 시상부문 및 추천기준

부문	추천 기준	추천자
문화체육	문화, 예술, 교육, 군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원장,학술및문화예술 단체장,각급학교장,체육단체장,읍면장
지역개발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각 사회단체장,읍면장
농림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로 지역주민의 농림업소득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각 기업체대표, 농협축협·산림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읍면장
사회봉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각 사회단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읍면장
환경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환경관련단체장,환경산림과장,읍면장

○ 공통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공적기간은 기준일 현재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4. 추천 제외대상

- 당해년도 향토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 향토민상을 동일 부문으로 1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5. 추천 구비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읍면사무소 비치)
-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 이력서 1통(단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함)
-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기타 공적 증빙자료

6. 수상자 결정

-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7. 시 상

- 제34회 정선아리랑제 및 제27회 군민의 날(10.15.)에 시상

8.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42), 또는 읍·면 총무부서

정선군공고 제2009-581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08. 26.

정 선 군 수

1. 건 명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4호, 제2008-239호(2009.01.02)로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정의 개정(조례안 제2조제5항)

-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의거 신고된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국민연금법」제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 증명된 최근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함

나. “이전기업보조금” 지급대상중 연구소 포함(조례안 제11조제1항)

- 강원도의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하는 이전기업보조금을 본사, 공장뿐 아니라 공장부설연구소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임대료지원 제외 단서규정 신설(조례안 제12조의2)

- 개별입지나 산업단지의 공장 또는 부지를 임대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의 일부(50%)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정선군 임대공장(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제외 규정을 신설(연 임대료 10/1,000)

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지원금액 개정

(조례안 제13조제2호)(조례안 제14조2호)

- 지식경제부고시 개정(1인당 월50만원에서⇒1인당 월60만)

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및 신청서 명시

- 상위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상위법개정에 따른 개정시간 절약으로 기업체에 빠른 지원가능

(조례안 제20조의 2)(규칙 안제8조의 2)

바. 국고지원 지방기업에 대한 정의, 지원 규정 개정 및 신청서 명시 (조례안 제2조 제7호)(안 제20조의3)(규칙안 제8조의 3)

- “지방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속한 기업을 뜻하며,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정선군내에서 3년이상으로 제한된 규정을 지방기업으로 확대하여 이전기업중 해당기업에 대하여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임대료 지원기간 및 신청서 명시(규칙 안 제3조의2)

- 조례제12조의2 임대료 지원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내 신청하고 최대5년간 지원

○ 물류보조금 지원에 대한 범위 설정(규칙 안 제7조)

- 운임 및 요금과 관련 처음 체결한 날부터 1년내 신청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0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전화 56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1.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지방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본사 또는 공장”을 “본사·공장 또는 공장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2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선군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50만원”을 각각 “6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도권지역 등에서 기업 및 연구소 이전에 대한 지원)”을 “(국고 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으로, “집단화하는” 을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 이전기업 보조금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고용보조금”을 “고용보조금의 일부”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

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19. <생략>

제10조(고용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4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3. <생략>
4.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5.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6.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

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7.~10. <생략>

제6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방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이상일 것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일 것
3.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을 채용한 기업일 것

②~③ <생략>

제8조(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지방기업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을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를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부지매입보조금)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부지매입보조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상한으로 한다.
- ②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임대료 지원) ①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초지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②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대료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 을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율” 을 “상시고용인원을”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 을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장시설보조금)” 을 “(투자보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장시설보조금” 을 “투자보조금” 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시설보조금신청서” 를 “별지 제7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 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7호서식” 을 “운임 및 요금과 관련 처음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 보조금)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제15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8호서식” 을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 을 “별지 제19호서식”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11조부터 제20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m ²)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사이전내역				
구분	이전前		이전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재지				
본사면적(m ²)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m ²)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m ²)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건축비 등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전 소재지	
이전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원/제공미터)
	임대면적 : 제공미터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등 이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입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 전 부 분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예정)일
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천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부담금	천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취득세, 등록세)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8호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m ²)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이전前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종 (분류번호)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운송약관 1부
2. 운송장비 등 운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0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m ²)	건 축 계 획 면 적 (m ²)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

【별지 제11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정선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자액(천원) :
 - 투 자 목 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제1항 내지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신규상시고용인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함)
3. 신규투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및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생산품	상시고용 인원수	신규고용 인원수	자산규모	신규투자규모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3. 신규투자내역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건	투자목적 기율
	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시설
합계			

4. 신규채용내역

연번	성명	채용일자	근로분야
1			
2			

5. 향후 사업계획

--

【별지 제14호서식】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규고용 인원 :

○ 투자이행사항

- 투자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작성요령]

-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 ② 동 조회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별지 제16호서식】

지방기업 관리대장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지방기업 투자금액	천원	고용규모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	고용보조	대상인원 : 명		
		총금액 : 명	국비: 도비: 시군비:	
② 점검 사항	점검 년월일	이행 여부 및 관련서류 확보		변동사항
	. . .			

[작성요령]

- ① 지방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 ② 점검사항은 지방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예: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보고서 등) 등에 대한 점검을 기록하고 지방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① 지방이전 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			고용규모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	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면 적:			
		분양가 차액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면 적:			
	개별 입지	임대료 감면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면 적:			
		매입가 차액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면 적:			
	고용보조		대상인원:			
			총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훈련보조		대상인원:			
			총금액:	국비:	도비:	시군비:
② 특이 사항						

[작성요령]

-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국내외투자기업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정선군-

(단위 : 천원, m²)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 락 처		전화 : 033)	팩스 : 033)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일		
	투 자 금 액			고용규모	명	
	업 종 (분류번호)		()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 산 지원액	계획 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 <input type="checkbox"/> 농공	임대료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분양가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개별 입지	임대료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매입가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투자 보조	본사이전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공장이전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고용촉진보조		대상인원 : 명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교육훈련보조		대상인원 : 명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특이 사항						

【별지 제19호서식】

포상금지급 신청서

포 상 금 신 청 인 인적사항	주소(소재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HP)	
투자유치 내역	투자가		국적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 종			
	종업원수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투지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합작(%)
	총투자비			
	시설투자액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1. 투자가의 사업계획서 1부
 -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2. 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외자도입증명서(외자도입에 한함)
 - 외환매입증명 및 주금 납입증명(수탁은행)
5.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정선군수 귀하

본인은 귀 군을 비롯한 사업성평가 업무를 의뢰하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거래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용역의뢰 및 신용정보활용 동의서

정선군수 귀하

당사가 귀 군에 기업설립 및 투자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의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성평가 업무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자료 제출등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군을 비롯한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당사 또는 당사의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고서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성 명 :

관계법령 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19. <생략>

제10조(고용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4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3. <생략>
4.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5.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6.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7.~10. <생략>

제6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방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이상일 것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일 것
3.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을 채용한 기업일 것

②~③ <생략>

제8조(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지방기업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정선군공고 제2009-587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공고

우리군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09. 08. 27 ~ 2009. 09. 05(1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검찰로 송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강원도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계 (033-560-2512)

2009. 08. 27.

정 선 군 수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보관장소	반송사유
		주민등록주소지		
강원33가3385	이일순	■강원 춘천시 윤교동 40번지 9호 8/2 ■강원 춘천시 윤교동 40번지 9호 8/5		이사감
서울8스6565	한국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016호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016호		이사감
충남1노8959	신용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17번지 19/4 주공아파트 123동 104호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정동 717번지 19/4 주공아파트 123동 104호		수취인불명
경남2추4560	한봉술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87번지 13/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87번지 13/		이사감
31러6975	박선용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66번지 1호 1/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66번지 1호 1/		이사감
경기3호7031	(주)한동아이엘피	■경기 여주군 흥천면 울곡리 35번지 1호 (83-1308) ■경기 여주군 흥천면 울곡리 35번지 1호 (83-1308)	종합자원폐 차장	이사감
강원70노2724	조강래	■강원 정선군 동면 화암리 351번지 1/3 ■강원 정선군 동면 화암리 351번지 1/3		이사감
충남45마3791	김두남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19번지 8호 2/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19번지 8호 2/		수취인불명
전남38나5333	손봉학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363번지 39/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363번지 39/	종합자원폐 차장	수취인불명
경기67거7904	김경덕	■경기 김포시 북변동 381번지 2호 4/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8번지 24호 20/1 301호		이사감
인천31너7767	허은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81호 28/1 노블레스빌라 101동 201호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81호 28/1 노블레스빌라 101동 201호		수취인불명
강원27다8167	정호진	■강원 강릉시 교동 46번지 1호 9/2 교동한신아파트 101동 1402호 ■강원 강릉시 교동 46번지 1호 9/2 교동한신아파트 101동 1402호		수취인불명
47서3863	차선호(상품용)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번지 3호 문산자동차매매단지A동 109호(대선자동차매매상사)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번지 3호 문산자동차매매단지A동 109호(대선자동차매매상사)		이사감
광주32더3640	김진화	■광주 북구 망월동 264번지 9/1 ■광주 북구 망월동 264번지 9/1		수취인미거주
경북82거3694	김형일	■경북 영주시 가흥동 578번지 1호 17/1 ■경북 영주시 가흥동 578번지 1호 17/1		수취인불명

정선군공고 제2009-591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08. 28.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 본 조례는 건축법(법률 제8974호 2008.03.21)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1098호 2008.10.29)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 정비하며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사항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주택부서(우편번호 233-701)

- FAX 제출 : 033-560-2596

- 문의전화 : 033-560-2472

붙임 :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으로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 2”를 “법 제6조”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축 또는 개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 5.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재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4”를 “법 제8조”로, “법 제48조, 제51조 및 제 53조”를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51조 및 제53조”를 “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법 제8조의3 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법 제8조의3 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72조”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를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4호”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법 제8조 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5. 기타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정선군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동일 허가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8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40퍼센트로 하고 최종 사용승인시 4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26조”를 “법 제35조”로, “법 제28조”를 “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법 제50조”를 “법 제58조”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을 “건축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3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이하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3조”를 “영 제27조의2 제2항”으로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의 합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3조제3항”을 “영 제27조의2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수대”를 “식수대.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3조 제4항”을 “영 제27조의2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4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69조의2 제1항”을 “법 제80조제1항”으로, “법 제69조의2 제1

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8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9조의2제4항”을 “법 제80조 제4항”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	대행수수료 산정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1시간
2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2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 5,000제곱미터 미만	3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 30,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30,000제곱미터 이상 ~ 100,000제곱미터 미만	8시간
100,000제곱미터 이상 ~ 300,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300,000제곱미터 이상	12시간

※ 대행수수료 =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1. 기술사 노임단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단가를 말하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장조사시 비율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수수료 산정예시)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고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없음)을 위한 업무 대행인 경우
- 2009년 기술사노임단가 296,530원 (1일)
- 296,530원 / 8시간 = 37,066원 (1시간당)

※ 대행수수료 = 37,066원 × 4시간 × 80퍼센트 = 118,611원 = 118,000원
(천원미만 절사)

정선군공고 제2009-596호

(FY2008)

2009년도 지방재정공시

□ 우리 군의 2008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는 3,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51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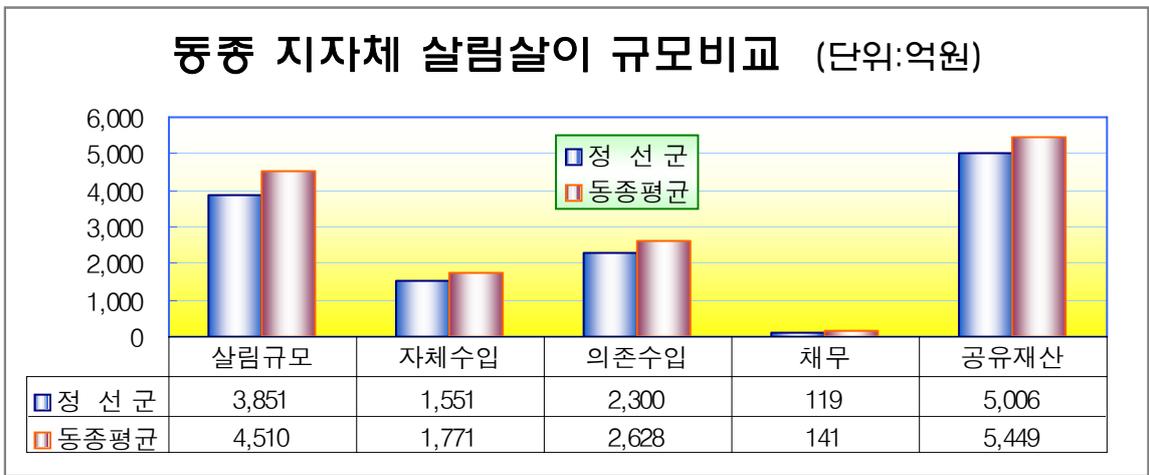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300억원으로 우리 군 살림규모의 59.7%입니다.

⇒ '07 대비 528억원 증가 (교부세 341억원, 보조금 187억원) 증가

○ 2002 태풍 '루사' 및 2003 태풍 '매미' 등 수해복구공사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채무는 119억원이 남아있어, 군민 1인당 채무액은 28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08년 토지 외 4종(67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건 (1,004억원)을 매각하여, 총 5,00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국 상위권 군 평균(1군 동종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2008년 살림규모는 전국 상위권 군 동종단체 평균액(4,510억원)보다 659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22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328억원이 적습니다.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채무액보다 23억원이 작은 규모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액 5,006억원은 동종단체 평균액(5,499억원)과 비교하여 493억원이 적습니다.

○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부터 동종단체 평균 산출방식을

– 기존의 전국 86개 군의 평균값 산출방식에서

– 전국 86개 군을 예산현액 순위로 1/2씩 나누어

■ 상위권(1~43번째)을 “1군” 으로 하고

■ 하위권(44~86번째)을 “2군” 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 우리 군은 예산현액 순위가 전국 군 단위에서 41번째로 “1군”에 포함되어 전년도 보다 높은 동종단체 평균값을 적용받게 된 결과입니다.

□ 한편, 우리 군의 20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23%이며(전국 평균 53.4%), 자체수입에서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64%(전국 평균 81.0%)입니다.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 행정안전부의 동종단체 평균산출 방식의 개편에 따라 우리 군의 2008년도 살림살이(자체수입, 의존재원, 공유 재산액) 규모가 동종단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 실질적인 2008년 살림살이 규모는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598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09. 01.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재단에 상근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문화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를 등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재단 발전과 정선아리랑 진흥 및 가치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개정
(안 제7조제1항·제4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문화예술담당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593
 - 문의전화 : 033-560-2548

붙임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대표이사들”을 “부이사장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표이사가”을 “부이사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표이사들”을 “부이사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중 “대표이사로”를 “부이사장으로” 으로 한다.